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5(금) 10:00

제2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8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3. 17.
- 라. 회부일자 : 2022. 3. 17.

2.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 공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및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
- 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2. 21. ~ 2022. 3. 13.)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여성가족과)

- 제10조제2항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양성평등기본법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검토

본 제정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을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명시함.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금천구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 향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보이며

- 다만, 적용대상 중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및 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금천구 산업재해발생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금천구 산업재해 발생 주요 현황

□ **산업재해 발생 실태**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업장 감독 수검결과(2019~2021년)**

- 점검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 주요사항 : 총 57건

연번	주요사항	건수	비고
1	석면조사 미실시	1	
2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2	2019년 1건 / 2020년 1건
3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미실시	26	일반 12명 / 특수 14명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2019년)	5	2019년
5	MSDS 미게시 및 교육 미실시	14	미게시 1건 / 교육 13명
6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4	구내식당 종사원 4명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미지정	2	2020년
8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미세먼지 마스크)	1	2019년
9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2	2021년

○ **연도별 위반(과태료)사항(2019~2021년)**

구분	주요사항	처분사항(과태료)	관련부서
2019	건강검진 미실시(5건)	500,000원 (1명당 10만원)	5명 미실시
	특수검진 미실시(14건)	1,400,000원 (1명당 10만원)	청소행정과(4)/도시안전과(6) 행정지원과(4)
	합 계	1,900,000원	1,520,000원 (자진납부 20%감액)
2020	산업재해 조사표 1달이내 미제출(1건)	15,000,000원 (1건당 1,500만원)	어르신장애인과
	MSDS* 미게시 및 교육 미실시(13명)	7,500,000원 (미게시 100만원, 교육 1명당 50만원)	행정지원과
	작업환경측정 미실시(4명)	800,000원 (1명당 20만원)	행정지원과
	건강검진 미수검(7명)	1,050,000원 (1명당 15만원)	7명 미실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미지정	10,000,000원 (1건당 500만원)	행정지원과
	합 계	34,350,000원	27,480,000원 (자진납부 20% 감액)
2021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10,000,000원 (1건당 500만원)	행정지원과
	합 계	10,000,000원	8,000,000원 (자진납부 20% 감액)

□ **산업재해 현황**

- 부서 및 인력 : 37개 부서, 973 명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2021.11.30. 기준)
- 발생현황 : 2019~2021년 총 47건

연번	부서명	총계(건)	'19	'20	'21	발생분야
총 계		47	11	24	12	
1	일자리창출과	27	9	14	4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2	복지정책과	1	0	0	1	한시생계지원
3	여성가족과	1	0	0	1	안심귀가 지원
4	어르신장애인과	2	0	2	0	장애인일자리,취업센터 작업
5	청소행정과	10	1	5	4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품처리
6	공원녹지과	6	1	3	2	공원관리

○ **발생유형**

유형/계	넘어짐, 미끄러짐	찢림 베임	부딪힘	떨어짐	끼임	질병	화상	그외
47	26	7	4	4	2	2	1	1

- 넘어짐(26건), 찢림·베임(7건), 부딪힘(4건), 떨어짐(4건) 순으로 많았으며, 작업자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발생 비중이 높음.

관 계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